

第七篇 言 論

第一章 言 論

第二章 건국후의 언론

第一章 언 론

第一節 언론의 시초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언론의 기본기능이라고 본다면 사람들의 언어 그 자체가 통신적 기능과 함께 언론적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발달되고 정형화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 조선시대의 조보(朝報) 또는 기별지(奇別紙)라고 할 수 있다.

조정의 공식발표는 아니었지만 승정원(承政院)에서 관리의 임면(任免)이나 주요 행정사안을 발표하면 각 부나 기관에서 파견된 기별군사가 기록하게 되며 이것을 다시 기별서사가 각 기관에 배달하는 것을 가리킨다. 또 지방관청에서는 오늘날의 관적으로 볼 때 서울에서 상주(常住)하는 연락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토인(京土人)을 두어 조정에서 발표되는 주요 사항을 수록하여 전달받기도 하였다.

이는 오늘날과 같이 통신이나 언론기능이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에 조정에서 결정되는 주요사항을 널리 알리는 통신수단이자 관보적(官報的) 성격의 언론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달방식은 대한제국이 들어서면서 관보(官報)로 발전하게 되는데 근대적 의미의 언론이 대두하기 시작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최초의 신문이라고 기록되고 있는 한성순보(漢城旬報)가 창간된 것은 1883년(고종 20년) 10월 1일(음 23일)이었다.

갑오(甲午)군란 후 일본 수신사로 일본에 건너갔다 귀국한 正使 박영효, 부사 김만식, 수원 서광범과 개화유였던 김옥균 등이 중심이 되어 창간을 추진한 한성순보는 오늘날과 같은 일간이 아니라 제호(題號)에서도 나타나듯 열흘에 한번씩 발행되는 순간(旬刊) 형태였다.

1. 독립협회의 독립신문

조선의 관할 주도권을 놓고 청(淸)과 다툼을 벌이던 일본은 1894년의 동학혁명을 계기로 발발한 청일전쟁에서 이김으로써 조선에서의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해 나갔다. 이

때까지만해도 일본은 침략의 야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선의 정치를 막후 조종을 하는 정도에 머물렀지만 이는 때를 기다리며 야욕을 숨기고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뜻있는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은 그같은 내외의 정세에 대해 우려와 함께 국민적 자각을 일깨우기 위한 방법을 찾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무렵 갑신(甲申)정변으로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했던 서재필(徐載弼)이 조선에 돌아와 외무고문에 취임하였다.

그는 새로운 문화의 도입을 역설하였고 조선의 정치적 자주독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졌다. 그것을 위하여 서재필이 우선 구체적으로 추진한 것이 독립협회의 결성작업이었다.

관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교모임의 형태를 띤 독립협회에는 조선정부의 고위관리를 비롯 이승만, 윤치영, 이상재, 양홍묵 등 청년지사들이 참여했으며 민중의 계몽 및 개화사상의 도입 등을 주요 관심대상으로 삼았다. 서재필은 조선의 자주독립을 천명한다는 뜻으로 모화관과 영사문 대신에 독립관과 독립문을 세우는 한편 신문발행을 추진하였다.

1896년 4월 7일 창간호를 낸 독립신문은 순 한글만을 사용한 최초의 민간 신문이었다.

2. 민간신문의 등장

독립신문은 창간된지 3년만에 폐간되고 말았지만 민간신문의 출현을 더욱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광무 2년인 1898년에 들어서자 주보인 <협성회보>와 주2회간인 <경성신문>이 잇달아 창간되었다. 협성회 회보는 이승만, 양목, 최정식 등이 중심이 되어 창간한 것으로 시사문제를 주로 다루었으며 경성신문은 주치소를 중심으로 발행되었는데 상업계발을 주요 관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두 신문은 발행인이 바뀌면서 제호도 변경되는데 협성회 회보는 <매일신문>으로 다시 <제국신문>으로 바뀌며 경성신문은 <대한황성신문>으로 다시 <황성신문>으로 바뀌게 된다.

<제국신문>과 <황성신문>은 독립신문이후 양대 민간신문시대를 주도하게 된다. 1899년에는 황국협회 기관지인 <시사업보>와 <상무시보>가 발행되었고 그보다 앞서 종교계 신문으로 <그리스도 신문>과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 등이 발행되었으나 일반 독자들을 위한 대중지로 확대되지는 못했다.

3. 일제하의 언론활동

일제하의 우리나라 언론은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선총독부의 유무형의 통제속에 놓이게 됨으로써 자유로운 취재활동이나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반발 또는 비판하는 내용의 논평에 관해서는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다.

언론사에 대한 허가 및 검열, 정간 및 폐간에 관한 행정적 권한을 모두 조선총독부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보도와 논평이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당시 우리나라 신문들의 보도성향이 단순한 사건보도 및 문화예술부문 즉, 당시의 용어로 학예분야의 보도에 치중하고 있었던 것은 그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점은 민족지를 포방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역시 마찬가지였다.

3·1운동을 전후한 시기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하신문이 제작, 배포되어 독립운동에 매진하자 일제는 언론정책을 포함한 각 부문의 통치방식을 강압통치에서 표면적인 문화정치를 포방한 회유정책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지만 그 과정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신문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였다.

인촌(仁村) 김성수(金性洙)를 중심으로 발기한 <동아일보>는 민족 순임을 포방하고 나섰다지만 경성방직등의 기업경영을 통하여 재계의 기반을 다지고 있었던 김성수로서는 처음부터 운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즉, 조선총독부의 조선통치이념에 타협 내지는 동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사건을 계기로 무기정간 당한 후 발행을 재기하는 조건으로 완전한 친일로 선화한 것은 당시 신문이 갖고 있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처음부터 대정실업(大正實業) 친목회를 배경으로 출발한 <조선일보>가 친일을 표방하며 창간된 것과는 대조를 이루지만 결국 운영과정에서 모두 동일한 색채로 변모하게 된 데는 별 다른 차이가 없다.

더구나 동아, 조선 두 신문은 실질적으로 일제시대의 대표적인 민간지였지만 김성수로 대표되는 <동아일보>와 후에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는 방응모의 <조선일보>는 일제시대라는 상황적 조건과 경영자들이 모두 정치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주 토호세력이었다는 점에서 경쟁적으로 친일의 대열에 편승하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민중의 기대와는 달리 반민족(反民族) 순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제와 타협해야 하는 민간신문의 경영층과 민족적 자각과 자주를 주장하는 기자들 사이에는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었다.

일제시대의 기자들은 계층적으로 대지주나 소작농 출신이 아니라 대부분 중소지주의 자녀들이거나 몰락한 귀족 또는 몰락한 중소지주의 자녀들이었으므로 자신의 지식을 무기로 반체제적 투자에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은 지식인들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민족언론에 대한 민중의 기대와 언론인의 역사적 사명 그리고 일제 총독부

당국의 신문발행 허가의 저의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고 진정한 언론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란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일제당국은 신문발행을 허가하면서도 신문지법, 출판법, 보안법, 치안유지법 제령 제7호 등의 법망을 통해 표현의 대상이나 내용을 규제하는 한편 사전규제로서 미리 협조의 형식으로 주의간담 경고 등을 통하여 보도금지를 요청했고 신문이 나온 후에는 삭제, 압수, 발매금지 또는 발행정지에 이르기까지의 행정처분을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행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자들에 대해서도 보안법, 신문지법, 출판법 등 관계법령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적용시켜 구금하여 처형이나 벌금을 물리는 등 조직적인 탄압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신문경영진 역시 경영적 안정을 앞세워 기자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지원하기 보다는 일제총독부의 요구나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기자들을 해고하는 사례까지도 빈번하게 생겨남으로써 기자들은 스스로의 권익보호와 언론의 본래적 기능회복을 위한 조직적인 투쟁에 나서게 된다.

第二節 해방후의 언론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은 자주독립을 염원해 오던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감격에 빠지게 하였다.

비록 38선을 경계로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함으로써 완전한 자주독립과 민족의 통일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일제의 식민통치와 같은 힘에 의한 강압정치는 사라지고 사회 각 분야에서 자유로운 기운이 분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언론부문 역시 마찬가지였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했을 때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던 우리말 일간지는 매일신보 하나 뿐이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1940년 8월 10일 동시에 폐간된 뒤로 매일신보는 그대로 발행을 계속했었으나 종이를 비롯한 각종 물자부족으로 감면(減面)을 거듭해 타블로이드 2쪽 짜리의 좁은 지면만으로 근근히 명맥만 이어 가고 있는 형편이었다. 8월 15일자 매일신보는 총독아베(阿部信行)의 「패전논고」를 게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오랜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음을 완곡한 방법으로 알리게 되었다.

그러나 아베의 「패전논고」는 한국민에게 역사적 해방의 감격을 전달하는 보도라기 보다는 패전한 총독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전달하는데 그쳤고 이튿날인 8월 16일자부터

일본의 패전에 따른 우리 나라의 운명을 예시하는 역사적인 기사들이 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해방 후 본격적인 언론자유화 시대를 맞은 것은 45년 9월 8일 미군이 인천에 상륙한 뒤 미군정청이 다음과 같은 언론정책을 천명하면서부터였다.

미군이 진주해 온 후인 현재 조선에는 문자 그대로의 절대한 언론자유가 있는 것이다. 미군은 조선사람들의 사상과 의사발표에 간섭도 안하고 방해도 안할 것이며 출판에 대하여 검열 같은 것을 하려 하지도 않는다. 언론과 신문의 자유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대중의 논(論)을 진기(振起)하고 또한 여론을 소소(昭昭)하게 알리는데 그 직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군은 언론자유에 대하여 취재를 방해하고 검열을 하려 하지는 않으나 그것이 정당한 의미의 치안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이런 경우는 별도로 강구하려 한다.

미군정은 이러한 언론정책에 따라 법적으로도 언론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9월 20일쯤 군정장관 아놀드는 일제하에서 한국인을 억압하던 각종 법령 중 출판법, 보안법, 치안유지법 등 12개를 폐지하고 기타 법령에서도 인종, 국적, 종교, 정치, 사상상의 차별적인 조항은 모두 폐지한다는 내용의 지령 제5호를 공포하였다. 이어서 10월 9일에는 법령 제11호를 공포하여 출판법, 보안법, 예비검속 등 7개 법률을 폐지한다고 밝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없이 보장하겠다는 미군정의 입장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뿐만아니라 미군정은 1945년 10월 30일에 공포한 군정법령 제19호 5조에서 「신문 기타 출판물의 등기」를 규정함으로써 신문 발행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일제하에서 신문발행의 법적근거로 사용되었던 신문지법은 신문을 비롯한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군정 법령 제19호는 이를 「등기제」로 하였으므로 두 법은 서로 상치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군정법령 제19호에서 등기제를 규정할 때에는 허가제로 되어 있던 신문지법은 당연히 폐기시켜야 옳았으나 군정당국은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이 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군정기간을 넘기고 말았다.

어쨌든 군정법령 제19호가 공포된 무렵부터 신문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나 종이가 부족했고 경제적인 여건도 나빴던 탓에 신문의 수는 늘어난데 비하여 발행부수는 많지 않았다.

1947년 9월 현재의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발행부수를 가진 경향신문이 6만부를 겨우 넘어서는 정도였고 두번 째로 많은 부수를 발행하는 서울신문이 5만2천 부였으며 그밖의 신문들은 4만부 또는 그 이하가 대부분이었으며 약 5, 6천부밖에 발행하지 못하는 신문들도 많았다.

이와함께 출판사의 숫자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서 1947년 3월 조선출판문화협회가 창립

第七篇 言 論

될 무렵에는 약 1백50개의 출판사가 1천여종에 달하는 출판물을 발간했고, 이 해 말에는 5백81개 출판사가 있었으며, 1948년에는 7백29개의 출판사로 늘어나 1천2백여 종의 책들을 발간하였다.

그러나 당시 서울에서 일간신문을 인쇄할 수 있는 시설을 제대로 갖춘 곳은 매일신문사를 비롯하여 일본인들이 발간하던 경성일보와 조선신문 그리고 인쇄소로는 근택인쇄소 등이 있을 정도였다.

第二章 건국후의 우리나라 언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사회 각 분야가 뿌리내림을 시작하였다. 언론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남한에 자유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좌익계열의 신문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며 존속한다 하더라도 세력이나 영향력은 현저하게 감소하게 된다.

해방후에 겪었던 이념적 혼란은 진정되고 사실 전달과 비평이라는 신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우리 나라 현대언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기간 역시 격동의 시기이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언론은 6·25라는 전쟁을 겪게되며 제1공화국에서 제5공화국에 이르기까지의 정치적 변화에 따른 대 독재(獨裁) 투쟁을 펴 나가는 한편 동시에 권력의 통제에 의해 언론이 무력화되는 아픔을 겪는 등 영욕이 교차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이 기업화해 가는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근현대사가 파란만장한 격동의 시기였던 만큼 그 상황과 공존할 수밖에 없었던 언론 역시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면 본장에서는 주요 필화사건을 중심으로 언론이 겪어온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의 언론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 정부는 1948년 12월 「광무신문지법」과 군정법령 제88호를 폐지시키고 대신 「신문지법」을 제정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신문지법은 공보처와 법무부가 공동 기초한 것을 법제처가 종합하여 만든 것으로 전문 32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거센 반발을 보여 국회에 넘어가지도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 이것은 정부와 언론계가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심각하게 대립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때 정부는 48년 9월 13일 제1신문을 정간시키는 동시에 부사장 김정동과 편집국장 엄홍섭 등을 체포하였고 이를 뒤인 9월 15일에는 조선중앙일보를 정간시키는 동시에 발행인 이달영 등 7명을 구속하고 신문에 대해서는 무기정간 처분을 내렸다.

또한 18일에는 세계일보를 정간시켰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국민신문과 대한일보를 폐간시켰다.

그러나 이 때까지만 해도 신문에 대한 정부의 견제는 사회혼란을 막으려는 당국의 필요에 의한 조치라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났을 뿐 권력의 필요에 의한 개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던 것이 6·25 이후부터는 권력과 언론의 대립과 갈등에 의한 정치적인 형태로 변모하게 된다. 이러한 언론탄압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52년 이른바 「발췌개헌안」이 국회에서 변칙으로 통과되고 자유당 정권에 의한 이승만대통령의 장기집권 음모가 표면화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51년 9월 25일 동아일보가 「金大連 조서 발표사건」을 보도한데 대해 공보처에서 이 기사가 사실무근이므로 취소기사를 게재할 것을 동아일보에 대해 요구하였으나 동아가 이를 묵살하자 편집인 고재욱과 취재기자 최홍조를 소환한 끝에 광무신문지법과 형법 제105조를 적용하여 불구속으로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권력과 언론과의 정면대결의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끝에 기소된 언론인에 대한 처벌은 유야무야로 끝나고 말았으나 일제시대 때부터 신문을 통제하던 근거가 되던 광무신문지법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第一節 京仁日報

새로운 경영진의 관리로 운영되던 경기신문은 81년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되어 경기도에서 분리되자 경기도와 인천으로 분리된 취재, 판매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1982년 3월 1일자로 제호를 경인일보(京仁日報)로 개제했다.

이 때부터 경기도의 언론은 경기일보시대를 맞게 되는데 이 때에는 각 지역에 주재하던 중앙일간지 및 통신사 기자들은 철수하게 되며 지방신문인 경인일보와 연합통신만이 취재권을 갖게 된다.

이같은 상황은 제5공화국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따라서 이 때 언론계의 주요 관심사는 지방주재기자의 부활 및 자유로운 언론환경의 보장 등이었다. 이같은 문제는 비단 언론계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의 제약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문제로 논의되기도 했는데 1987에 이르러 언론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주재기자의 부활 프레스카드제의 폐지,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화 등을 골자로 한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이 대체입법으로 공포되어 언론자유화의 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해직 언론인을 중심으로 한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10여개의 일간지를 비롯 방송 통신의 신설과 부산의 국제신문, 제주의 제남신문, 한국일보사에서 발행하던 서울 경제신문, 신아일보 등 한때 폐간됐던 신문의 복간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1988년 3월 1일 현재 신문 24개사, 방송 24개사, 통신 1개사 등이 문화공보부에 등록신청을 냈거나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87년 9월부터 중앙일간지를 비롯 KBS, MBC등 방송사에서는 경기도에 주재기자를 상주시키기 시작했는데 88년 3월 1일 현재 경기도에는 동아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국일보, 한국경제신문, 중앙일보, KBS, MBC등 기중 언론사와 신설된 한겨레신문사에서도 주재기자를 파견하고 있으며 기자를 상주시키지 않고 조선일보를 비롯 설립이 완료되는 신설 언론사에서도 적정한 인원의 기자를 파견할 것으로 보여 주재기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기지역의 언론상황은 경인일보와 연합통신이 주로 관장하던 것에서 벗어나 매우 다원화된 상태로 환원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경인일보 외에 윤석한을 대표이사로 한 경기일보사가 문공부에 등록, 1988년 8월 중 창간을 목표로 설립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에는 경인일보사의 시설중 인천에 배치시키고 있었던 시설을 인수한 인천신문이 1988년 7월 15일 창간호를 발행했으며 인천에서 주간으로 발행되던 경기교육신보가 자진 폐간과 함께 일간신문인 기호신문이란 제호로 등록, 역시 1988년 8월중 창간을 목표로 설립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경기·인천지역에는 기존의 경인일보를 비롯 인천신문, 경기일보, 기호신문 등 4개사가 경쟁하게 되어 새로운 경쟁시대를 맞게 되었다.

第二節 지역언론

언론은 중앙일간지, 동아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 한겨레신문 등과 스포츠신문, 경제신문 등이 구독되고 경기·인천지역 일간지인 경인일보, 경기일보, 인천신문, 기호신문, 경인매일신문, 중부일보, 수도권신문 등이 주재기자를 두고 취재와 보도를 하고 있으며 일간지 총구독 부수는 36,000부다.

지방화시대에 따라 발간된 광주지역 신문으로 1989년에 창간된 하남민보와 하남신문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됨으로 하광민보가 1990년에 창간 발간되었다가 역시 휴간상태이며, 1991년 9월에 창간된 하광뉴스와 1992년 9월에 창간된 하광타임즈·광주타임즈가 발간되고 있는데 모두 주간지이며, 보급부수는 5천부이다.